

유의사항

※ 이 통보서는 보험급여를 개시한 후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- ①: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.
- ②: 가입자(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대주)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를 적습니다.
- ③: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를 적습니다.
- ④: 해당 번호에 "○"표 합니다.
- ⑤: 진료 개시 연·월·일 및 진료 종료 연월일을 적습니다.
<예시 1: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진료받은 경우 → 2000.7.1~2000.7.5>
<예시 2: 2000년 7월 1일부터 통보일까지 진료받고 있는 경우 → 2000.7.1~현재>
- ⑥: 제3자의 행위로 부상당한 부위 및 상병명을 적습니다.
<예시: 왼쪽 팔 골절>
- ⑨: 부상을 입힌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를 적습니다.
- ⑩: 사고가 발생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.
<예시: 2000.7.1. 13시 30분>
- ⑪ ~ ⑫: 진료받고 있는 병원·의원의 이름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⑬: 언제, 어디서, 누구에 의하여, 어떻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통보서 작성 및 제출

통보인



접수, 확인 및 처리

국민건강보험공단